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 현행 유지 건의

2022. 10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조세감면 제도 현행 유지 건의

I.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산업의 집적과 원활한 공장 설립을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개정으로 2010년 이후 기존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개칭되었으며, 명칭 뿐 아니라 건축물 기준이 고밀·고층화되고 첨단산업 입주에 유리하게 되면서 전국 각지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음.
- 더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에 근거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시행자)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도 지식산업센터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그러나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이 밀집하고 산업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1년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80.6%가 수도권에 밀집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2021년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235개 중 수도권 996개(80.6%) -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2022
-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12일, 수도권 편중현상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 하지만 동 개정안에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지식산업센터 최초입주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시행자의 재산세 감면율을 낮추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비수도권 감면율 변화

감면대상	취득세 감면율		재산세 감면율	
	기존	개정안	기존	개정안
시행자	35%	35%	37.5%	35% (5년 한)
입주기업	50%	35%		

- 현재 비수도권도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산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현재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은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 유치가 더딘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감소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구조고도화와 투자활성화에 제한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II. 건의

- 기 입법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감면)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림.

2022. 10. 11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천

